

산업안전보건법중 개정법률(안)

- 10월 18일 입법예고된 내용 -

[지난호에 이어]

현행법률	개정법률(안)
<p>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p> <p>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④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건강진단의 회수·검사항목·검진비용,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⑧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의료기관"으로 본다.</p>	<p>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_____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_____</p> <p>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 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⑥ _____</p> <p>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대상,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실시절차, 검사항목의 종류 및 수가,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실시결과와 통보 및 보고 기타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⑨ 제15조의2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p>
<p><신설></p>	

현행 법률	개정 법률(안)
제 6 장 감독과 명령	제 6 장 감독과 명령
<p>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⑤ <생략></p> <p>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⑦ <생략> <신설></p> <p><신설></p> <p><신설></p> <p>⑧ <생략></p>	<p>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⑤ <생략></p> <p>⑥ _____ _____</p> <p>_____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_____</p> <p>⑦ _____</p> <p>⑧ 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시정기간 등을 명시한 시정명령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는 당해 시정명령서에 적시된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즉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p> <p>⑪ <생략></p>
제 7 장 산업재해예방기금	제 7 장 산업재해예방기금
<p>제5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56조(기금의 용도) ① _____</p> <p>1.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p> <p>2. ~ 4. <생략></p> <p>② <생략></p>
제 8 장 보칙	제 8 장 보칙
<p>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3조(비밀유지) _____</p> <p>_____ 유해·위험성조사결과보고서 _____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료를 검토하는 자, 제43조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제 9 장 벌칙	제 9 장 벌칙
<p>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p> <p><신설></p>	<p>제67조(벌칙) _____</p> <p>1. _____</p> <p>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p>

현행법률	개정법률(안)
<p>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3. 제34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p>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신설) <p>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p>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제49조의2 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임회시키지 아니한 자 4. ~ 5. <생략> <p>제7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금에 처한다.</p> <p>제67조의2(벌칙)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제2항·제3항·제9항, 제34조제2항·제8항, 제35조제1항·제7항 _____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33조제10항, 제34조제9항, 제35조제8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_____ <p>제68조(벌칙)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제2항, _____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33조제6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표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p>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40조제5항 _____ <p>제70조(벌칙)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제1항·제3항 _____ <p><삭제></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 5. _____ <p>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현행 법률	개정 법률(안)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25조,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1.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생략>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9. ~ 11. <생략>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p>④ ~ ⑦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p>②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제10조의2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p>③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제25조,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항·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제51조제9항·제10항, 제52조의8 또는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p>삭제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_____ 6. _____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보고서를 _____ 7. _____ 8. _____ 제43조제4항 _____ <p>9. ~ 11. _____</p> <p>삭제</p> <p>④ ~ ⑦ _____</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중 제26조의3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보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명령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벌칙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